적립식예금약관

개정 2015.01.01.

- 제1조(적용범위)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제6조(이자 등)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 ②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 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 ④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

여 이자를 지급한다.

-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신용부금 등은 세금 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01.6.10>
 -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 1. 예금기간 : 1년 이상
 -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이내
 -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
 -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명의변경은 가능하다.
 -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